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공모 안내서

202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6. 사업 추진절차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2. 사업 수행내용
3. 공통사항

III.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3. 민간부담금 비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IV. 사업 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2. 문의처

V.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유의사항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료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자살 동기 1위 또한 정신적 문제
-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는 치료 위주로 제공되어, 예방 관리 및 조기 치료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 미흡
 - 우울증을 포함한 다수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개입(상담과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기타 질환 대비 국가의 투자 효과성 高

■ 개인별 연령별 환경에 따른 심리케어 서비스 다각화 접근 필요

- 연령대별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요인이 상이하게 작용하여 정신 질환 악화 및 자살 동기에 차이가 있으며, 조기 발굴 및 지원 방식에 있어 차등화 必
 - 도시화, 1인 가구 비중 증가, 사회적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현대인은 스트레스, 수면부족, 고립, 울분 등 다양한 심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 자살률은 실업률, 부채율 등 경제적 지표와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청년~중년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문제(실업, 미취업 등)를 자살 충동의 주 이유로 선정

◇ 초거대 AI를 활용한 적정 심리케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실증으로 전문영역 서비스 디지털화 가속, 심리상담 분야 업무 효율화 및 자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2

사업 목표

- 초거대 AI를 활용한 연령대별 적정 심리케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실증으로 전문영역 서비스 디지털화 가속, 심리상담 분야 업무 효율화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22.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22.9, 관계부처합동)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23.4,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전국민 AI일상화 실행계획 (23.9, 관계부처합동)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23.12,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간접비' 및 '연구수당' 산정 불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12.29.)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시행령 시행 2021.2.5.)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추진방향

-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에 초거대 AI를 활용한 지원서비스 서비스 개발·실증
-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 자살 등 사회문제, 부족한 상담인력, 사회적 편견·사생활 노출 등으로 치료를 꺼리는 일반인에게 초거대AI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 강화 및 부족한 상담인력의 업무효율 지원
- * 정신질환 분야(안) : 연령대별 사회적 이슈, 다빈도 및 발병 증가율이 높은 ①우울증, ②불안장애(공황, 강박, PTSD), ③ADHD 선정 (5종 선정)

□ 추진방법

- (추진방식) 개발영역을 선택하여 개발·실증 추진
 - 개발영역을 선택하여 제안한 2개 컨소시엄 선정

구 분	① 국민체감형 서비스	② 전문가 보조 서비스
지원대상	AI 전문기업 컨소시엄	
지원기간	'24년 협약일 ~ '27.12.31(4년 지원)	
사업비 총액	160억원 이내 (‘24~’27년까지 4년간 매년 40억원 내외)	80억원 이내 (‘24~’27년까지 4년간 매년 20억원 내외)

* (일정) 과제공모·협약(4월~6월), 수행(협약일~'24.12.31)

* (선정) 분과별 1개 컨소시엄(컨소시엄은 대·중·소기업, 의료기관 또는 상담센터, 비영리기관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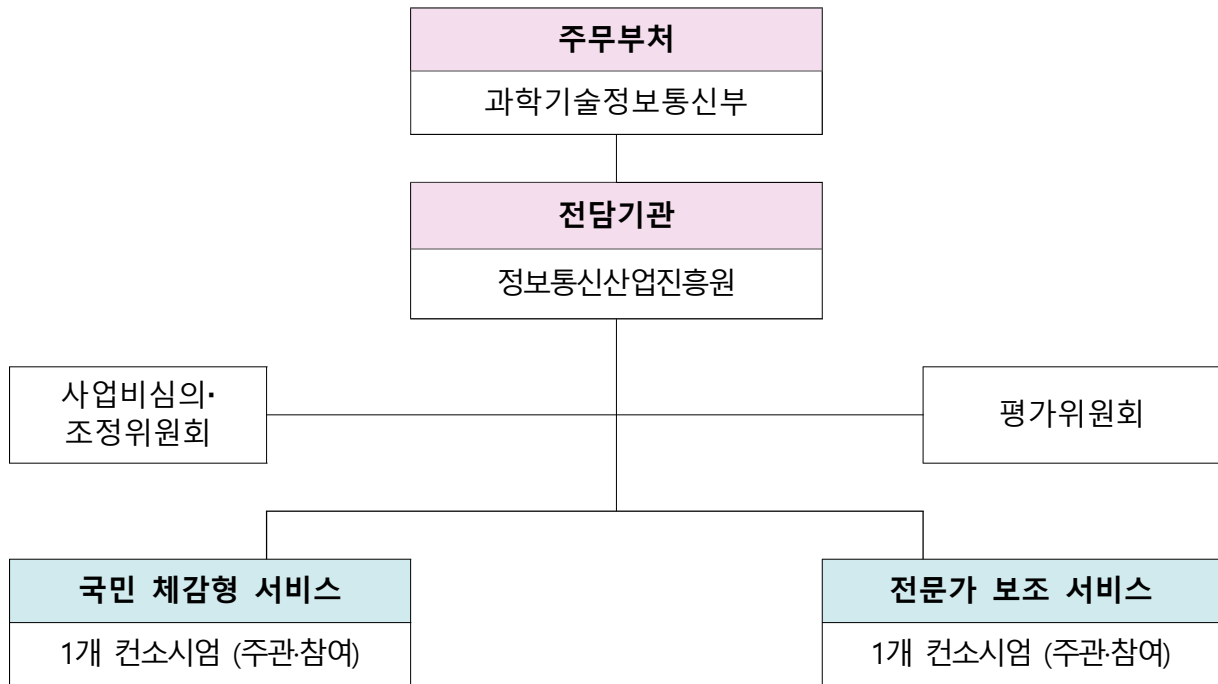
* (사업비) 연차평가 결과,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데이터 수집·가공) 정신건강·심리 관련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및 초거대AI 서비스 개발에 활용
- (대국민 활용) 스크리닝 결과 및 축적 데이터 정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등 국민 체감형 솔루션 개발·실증
- (전문가 활용) 라이프로그, 생체데이터, 문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상담사, 의료진) 보조를 위한 상담인력 보조 솔루션 개발·실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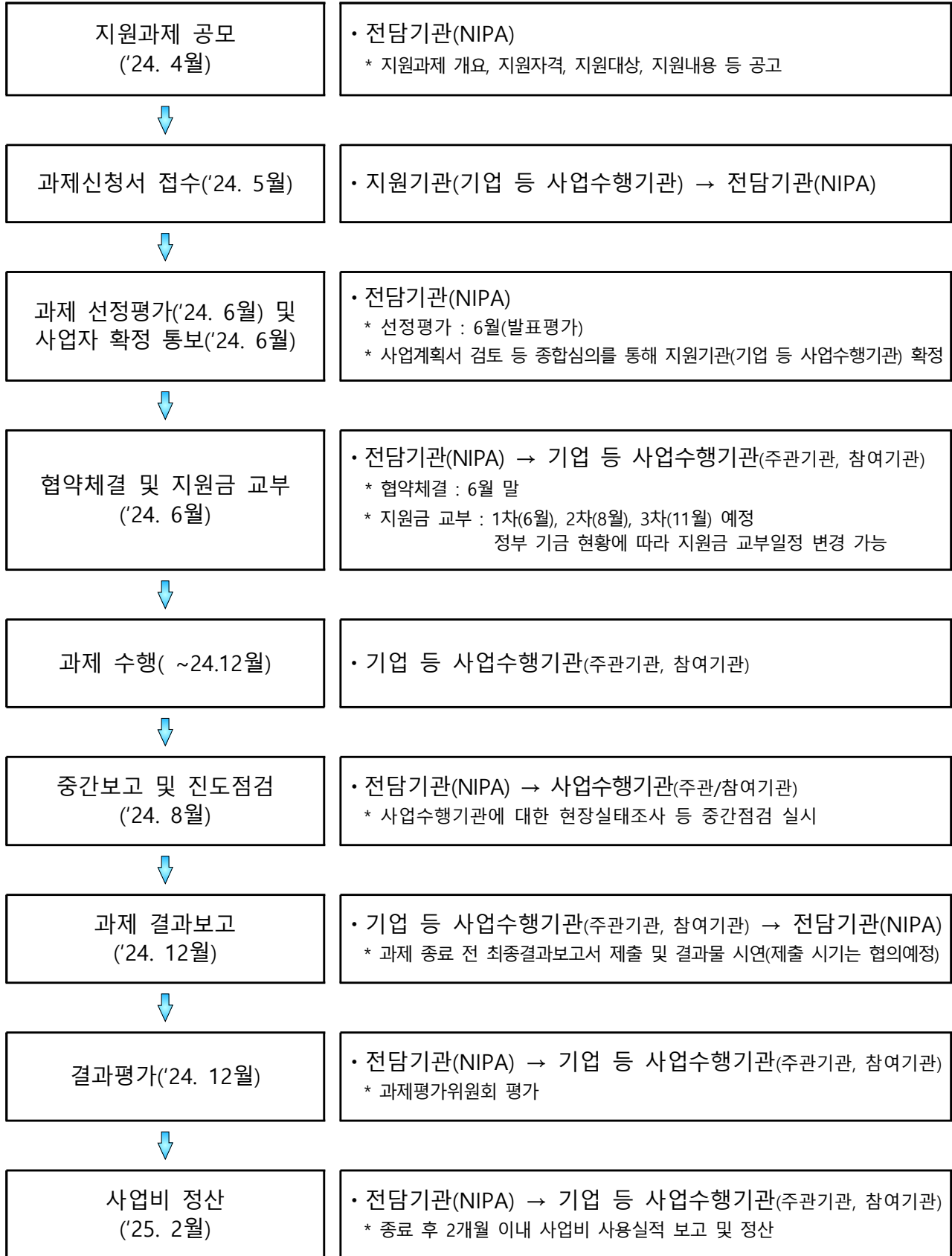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초거대 AI기반 프로젝트 시행 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과제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 주관/참여기관 과제 수행 진도 관리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6

사업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1차년도 사업 추진일정이며,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① 국민체감형 서비스	② 전문가 보조 서비스		
지원기간	○ 2024.협약월 ~ 2027.12.31. (4개년도)			
지원규모	○ 연간 40억원 이내	○ 연간 20억원 이내		
	* 연차 평가결과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매년 동일하게 지원 예정이나, 정부 예산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심리케어·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구축·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민체감·전문가 보조 각 1개 컨소시엄			
지원조건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지원내용	○ 데이터 수집·가공 - 심리케어·정신건강 관련 보유 데이터 등 AI솔루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지원 ○ AI솔루션 개발 및 실증 - 초거대AI 모델 AI솔루션(국민 체감형,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AI솔루션 실증 완료 후 솔루션 성능평가 실시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민간매칭 관련 정의 및 예시 ◆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 정부출연금 : 과제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 민간부담금 : 과제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해당 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최소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준용
-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국비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 검토·조정위원회에서 필수 사업비에 대해 검토·조정 후 확정

○ **(컨소시엄) 초거대AI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①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 (주관기관) "도메인(디지털헬스분야) 지식 보유 기업" 또는 "초거대AI 플랫폼(서비스) 기업"
- (참여기관①) "데이터 가공 및 솔루션 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
- (참여기관②) "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실증이 가능한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
- (참여기관③)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평가/검증이 가능한 의료기관"
- (참여기관④) "심리케어 관련 공동 개발 및 협력(효과성 검증, 자문 등) 가능 비영리기관"

* 주관 및 참여기업/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기관	디지털헬스분야 지식 보유 기업 또는 초거대AI 모델 개발 역량 ICT 기업	1개 (* 필수)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플랫폼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 등 지원)
참여기관	AI기술 보유 또는 데이터 가공 사업 영위하는 기업	1개 이상 (* 필수)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실증 지원 등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유관기관	1개 이상 (* 필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평가/검증 가능 의료기관	1개 이상 (* 필수)	
	관련 협회, 학회, 학교 등 (비영리기관)	1개 이상 (* 필수)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효과성 검증, 자문 등) 지원

* 컨소시엄 동시 지원·신청 불가(국민 체감형·전문가 보조 동시 지원 불가)

* 참여기관수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1개이상 필수 기업·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주관기관)는 5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컨소시엄은 사업종료 후 각 분과별 수행과제에 대해 1년간 무상 유지관리 의무

* 주관/참여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예정기업은 불가)

* 1개 기업·기관 1역할 신청 원칙

②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 (주관기업) "도메인(디지털헬스분야) 지식 보유 기업" 또는 "초거대AI 플랫폼(서비스) 기업"
 - (참여기업①) "데이터 가공 및 솔루션 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
 - (참여기업②) "심리관련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심리상담기관"
 - (참여기업③) "심리관련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의료기관"
 - (참여기관④) "심리케어 관련 공동 개발 및 협력(효과성 검증, 자문 등) 가능 비영리기관"
-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기관(참여)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기관	디지털헬스분야 지식 보유 기업 또는 초거대AI 모델 개발 역량 ICT 기업	1개 (* 필수)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플랫폼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 등 지원)
참여기관	AI기술 보유 또는 데이터 가공 사업 영위하는 기업	1개 이상 (* 필수)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실증 지원 등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심리상담기관	1개 이상 (* 필수)	
	데이터 제공 및 실증 가능 의료기관	1개 이상 (* 필수)	
	관련 협회, 학회, 학교 등 (비영리기관)	1개 이상 (* 필수)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효과성 검증, 자문 등) 지원

- * 컨소시엄 동시 지원·신청 불가(국민 체감형·전문가 보조 동시 지원 불가)
- * 참여기관수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1개이상 필수 기업·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
- * 컨소시엄 총괄책임자(주관기관)는 5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 컨소시엄은 사업종료 후 각 분과별 수행과제에 대해 1년간 무상 유지관리 의무
- * 주관/참여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 스타트업은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예정기업은 불가)
- * 1개 기업·기관 1역할 신청 원칙

구분	내 용						
<p>과제 개요</p> <p>요 약</p>	<p>□ 개요 (목적 및 추진배경·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에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향상 및 국가 AI 혁신 생태계 조성 ○ (추진배경) 초거대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자살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수용도 제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의 예방 관리 및 조기치료 서비스와 심리사 인력은 부족하여 대국민, 의료진 대상의 선제적 서비스 개발 추진 <p>* OECD 국가 평균 기준 韓 9,900명이 필요하나, '20년 기준 1,695명 전문 심리사 보유 (OECD 1/8 수준), 「OECD회원국 심리사 제도를 활용한 대한민국 건강체계 효과성 제고방안, 2022」</p> <p>□ 사업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을 위한 맞춤형 심리케어 서비스, 전문가용 심리치료 방향제시 등을 제공하는 초거대AI 기반 대민·전문가 보조 AI서비스 개발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 사회적 이슈, 다빈도 및 발병 증가율이 높은 정신건강 질환(① 우울증, ② 불안장애(공황, 강박, PTSD), ③ ADHD 등) 선정 * 상기질환 外 정신질환 추가하여 추진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20%;">분류</th> <th>서비스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국민체감형 서비스</td> <td>연령별 고위험군·일반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td> </tr> <tr> <td>전문가 보조 서비스</td> <td>연령별 맞춤 분석 상담방향 제시, 결과리포트 제공 등</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전문가 특성을 반영하여 ① 국민 체감형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실증 ②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실증 과업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대민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 전(前)단계 고위험군(경계인)과 일반인들 대상 일상대화, 라이프로그·생체정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 적정 정신건강 연관 서비스 등 제공 ②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대민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인력에게 정신건강 상태 모니터링 분석 결과 제공, AI기반 피상담자 상담방향제시 등 전문가 보조 서비스 제공 ③ 초거대AI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민·전문가 환경에 따라 개발된 초거대AI 서비스의 제공방안 제안 ④ 초거대AI 서비스 실증 및 보급·확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거대AI 서비스의 신뢰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민·전문가 서비스 다기관 교차검증 추진 </div>	분류	서비스 예시	국민체감형 서비스	연령별 고위험군·일반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전문가 보조 서비스	연령별 맞춤 분석 상담방향 제시, 결과리포트 제공 등
	분류	서비스 예시					
국민체감형 서비스	연령별 고위험군·일반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전문가 보조 서비스	연령별 맞춤 분석 상담방향 제시, 결과리포트 제공 등						

①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대민** 전문가

- ◇ 정신건강 선별 검사 문항, 생성형AI 일상 대화 및 라이프로그 등을 활용하여 스크리닝, 질병발생 가능성, 예방 방법 등의 선제적 알림서비스 및 연관 서비스 제공
- ◇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 필수(소아·청소년/성인/노인 등)
 - (예시1) ADHD 등 행동문제와 우울증, 정서문제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스크리닝 및 예방 솔루션
 - (예시2) 성인 정신질환자 복합적인 스크리닝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솔루션

○ (데이터) 체감형 서비스(정신건강 예방 관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심리 관련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 정신건강 선별 검사 문항, 생성형 AI와의 일상대화 및 라이프로그 등을 통해 심리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정신질환 취약계층 선별

< 데이터 수집(예시) >

구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수집 방식
대민 서비스	국민 체감형 정신건강 서비스	일상대화, 라이프로그, 문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봇 대화 수집 ◦ 디바이스 활용 수집 ◦ 공개 문헌 DB 활용

수행 내용

심박수, 호흡량, 맥박, 운동량 등의 라이프로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워치, 모바일, 시스피커 등) 등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등

※ 다양한 멀티모달 형태로 솔루션 개발 제안 가능

○ (AI서비스 개발) 정신건강 데이터에 초거대 AI기반 모델로 학습하여 체감형 상담 서비스 개발 및 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에이전트*** 구성·개발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생성형AI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건강 결과 요약·분석, 걱정 답변 제시, 내원 필요 여부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걱정 대처 정보 제공

- 위험인자 감지 서비스, 질병정보 안내 및 맞춤형 서비스 등 기능 탑재
- 추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AI에이전트 개발 및 연계 필요

- (정신건강 연관 서비스)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 또는 개선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관 서비스 개발·실증

< 국민 체감형 심리케어 서비스 (예) >

- 학습장애,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초거대AI 서비스를 통해 상태를 입력, ADHD 등 위험 증상을 예측하고 인근 추천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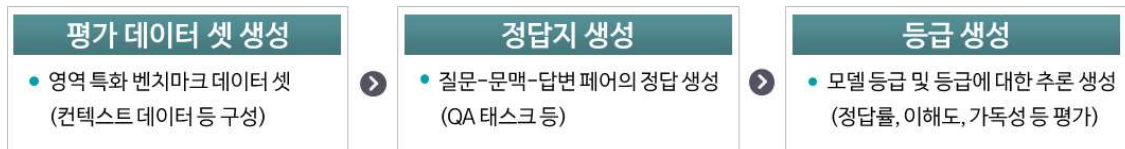
※ 제안 컨소시엄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걱정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

구분	내 용								
(공통) 수행 내용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㉔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대민 전문가 </div> <p>◇ 상담인력 혹은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 분석·검사·치료 도구 및 논문, 문헌, 상담기법 등의 보조 서비스 제공</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 (전문가 보조) 심리·정신질환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결과리포트 등 보조 솔루션 </div> <p>○ (데이터) 상담인력 보조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심리상담 학습데이터 수집·가공 - 상담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결과분석·검사·치료도구) 등에 학술자료(논문, 문헌), 상담기법 데이터 등을 서비스 개발에 활용</p> <p style="text-align: center;">< 데이터 수집(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데이터 수집 항목</th> <th>데이터 수집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가 보조</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담인력 보조 서비스 개발</td> <td>라이프로그, 생체데이터, 문헌 등 전문가 보조를 위한 데이터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EMR 활용 ◦ 기관 데이터 활용 ◦ 공개 문헌 DB 활용 </td> </tr> </tbody> </table> <p>○ (AI서비스 개발) 심리상담 데이터에 초거대 AI기반 모델로 학습하여 상담인력(전문가) 보조 가능한 솔루션 개발</p> <p>- (심리상담 보조 솔루션) 상담인력 혹은 의료진과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평시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분석 리포팅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내용 자동 전사(자연어처리), 상담사가 활용 가능한 다양한 결과 분석·검사·치료 도구 등 추천 * 스크리닝 결과 별 차등화, 의료진 및 상담인력별 적정 치료방향 제안 기능 개발 <p style="text-align: center;">< 상담인력 보조 서비스(예) ></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 성인 우울증 심리 상담시, 상담자의 심리상태 및 우울 정도를 초거대AI 서비스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심리치료 가능하게 보조 </div> <p>※ 제안 컨소시엄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적정 연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p>	구 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수집 방식	전문가 보조	상담인력 보조 서비스 개발	라이프로그, 생체데이터, 문헌 등 전문가 보조를 위한 데이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EMR 활용 ◦ 기관 데이터 활용 ◦ 공개 문헌 DB 활용
	구 분		데이터 수집 항목	데이터 수집 방식					
전문가 보조	상담인력 보조 서비스 개발	라이프로그, 생체데이터, 문헌 등 전문가 보조를 위한 데이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EMR 활용 ◦ 기관 데이터 활용 ◦ 공개 문헌 DB 활용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㉕ 초거대 AI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div> <p>□ 대민·전문가 서비스 환경에 따라 개발된 초거대AI 서비스의 제공방안 제안</p> <p>○ (클라우드 서비스 방안) 개발된 초거대AI 서비스를 대국민·전문가에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환경(SaaS 化) 구축</p> <p>- 초거대AI 서비스의 운영·배포 환경을 구축하여 개별 서비스 운영 환경 제공 및 심리케어 시스템 구독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조회, 구독, 이력 관리 등 서비스 운영 가능한 플랫폼 환경 지원 * 연령대별, 대상별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p>○ (기술 트렌드 적용 방안) 개발된 초거대AI 서비스의 저지연, 정보보안, 네트워크 안정성 등의 장점을 지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환경 검토</p>									

④ 심리케어·정신건강 영역 특화 모델 개발

- (영역 특화 모델) 초거대 AI 모델 기반의 영역 특화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에 특화된 모델 개발 추진
 - 모델 개발은 ①모델 설계, ②학습데이터 구축, ③모델 훈련의 3단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심리케어·정신건강 분야에 해당되는 영역 특화 모델 설계가 중요
 - (모델 설계) 초거대AI 기반 “심리케어·정신건강 영역 특화 모델” 개발을 추진을 위해 대국민, 전문가 대상의 “영역 특화 모델” 을 설계
 - (학습데이터 구축) 심리케어·정신건강 영역 특화 모델 개발을 위해 국민 체감형 심리케어 서비스(대만)와 상담인력 보조(전문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
 - * 데이터 수집 시 기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및 DRB(Data Review Board) 절차 필요
 - (모델 훈련) 구조 설계된 LLM모델을 통해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 훈련(Training)·사용(Usability)·개선(Enhancement) 등을 수행
 - (에이전트 개발) 개발된 영역 특화 LLM 모델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한 관련 서비스 기능을 연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 (평가·검증) LLM은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모델로, 종합적인 성능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개발된 모델의 다양한 검증 방법 필요

< 모델 평가과정(예시) >



- (데이터 평가) 윤리, 편향성, 구문 정확성, 할루시네이션, 레이블링 일관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검증
- (서비스 평가) 영역 특화 도메인, End-user, 서비스 목적 및 형태 등 다양한 관점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 마련
 - * 모델의 ①신뢰성 평가(TTA 등)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서비스 ②효과성 평가는 제3의 상담기관·의료기관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보안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며, 윤리적·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체계 검토 필요
- 시나리오 기반 실제 평가 및 견고성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고려하여, **영역 특화 서비스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⑤ 초거대AI 서비스 실증 및 보급·확산

- **(서비스 실증)** 개발된 심리케어·정신건강 솔루션의 검증을 위해, 영역(도메인) 특성상 의료기관(병원), 심리상담센터 등의 대상 실증을 수행하여 **단계적으로 국민체감 서비스 실시**
 - * 정확성 및 안전성 검증과 실증 절차를 통해 도입·확산 추진
- **(국민체감 서비스 실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실증방안 및 서비스 보급·확산 방안 제시
 - * 서비스 제공자 형태, 수요 프로세스, 연계 서비스 형태 등 구체적 실증 시나리오 제시
 - * 실증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서비스 방안 마련 제시 및 보급·확산 추진
- **(교차검증)** 영역 특화 모델의 정확도, 안전성, 유효성 등 검증을 위해 시스템별 교차검증 방법론 개발 및 다기관 교차검증 추진
 -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교차검증 데이터셋 구축, 검증절차 마련, 교차검증에 따른 SW 정확도·안정성 및 진료보조 지원 수준 검증 등
 - * 서비스의 검증은 효과성 평가 제3의 상담기관·의료기관 등과 신뢰성 평가(TTA 등)로 구분하여 추진
 - * 효과성 평가는 2차년도부터 매년 수행, 신뢰성 평가는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추진(4차년도)

구분	내 용		
(공통) 추진 체계 및 고려 사항	<p>□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역할</p>		
	<p>○ “기업(플랫폼 기업, 도메인 지식 보유 기업, 솔루션 개발 기업 등)” 및 “심리상담기관·의료기관·비영리기관(학교, 협회, 학회 등)”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초거대AI 플랫폼 기반 전문서비스 개발 추진</p>		
	<p>□ 사업추진 시 요구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데이터 활용</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가공 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td> </tr> </table>	데이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가공 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데이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가공 시,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준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서비스 개발</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서비스(국민체감, 전문가 보조)에 대한 개발은 필수이며, 컨소시엄에서 관련 서비스 과업 내용은 추가 제안 가능 </td> </tr> </table>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서비스(국민체감, 전문가 보조)에 대한 개발은 필수이며, 컨소시엄에서 관련 서비스 과업 내용은 추가 제안 가능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서비스(국민체감, 전문가 보조)에 대한 개발은 필수이며, 컨소시엄에서 관련 서비스 과업 내용은 추가 제안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UI/UX</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에이전트 형태로, 사용자 특성이 반영된 UI/UX 개발 </td> </tr> </table>	UI/U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에이전트 형태로, 사용자 특성이 반영된 UI/UX 개발
	UI/U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에이전트 형태로, 사용자 특성이 반영된 UI/UX 개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기술 신규성</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시, 최신기술 트렌드 반영 필요 </td> </tr> </table>	기술 신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시, 최신기술 트렌드 반영 필요
기술 신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시, 최신기술 트렌드 반영 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실증 추진</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체감형 및 전문가 보조 형태의 실증 추진 방안 제시 </td> </tr> </table>	실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체감형 및 전문가 보조 형태의 실증 추진 방안 제시 	
실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체감형 및 전문가 보조 형태의 실증 추진 방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개인정보 보호</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반영이 필요하며, 글로벌 표준과 법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준(GDPR) 등의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td> </tr> </table>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반영이 필요하며, 글로벌 표준과 법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준(GDPR) 등의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반영이 필요하며, 글로벌 표준과 법규, 국제적 개인정보보호기준(GDPR) 등의 준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보안성</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보안 모듈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 가공, 협업 등을 위한 보안체계 마련 </td> </tr> </table>	보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보안 모듈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 가공, 협업 등을 위한 보안체계 마련 	
보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보안 모듈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 가공, 협업 등을 위한 보안체계 마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보급·확산</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거대AI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td> </tr> </table>	보급·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거대AI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보급·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거대AI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규제 적합성</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미국 FDA 등 관련 규제의 초거대AI 서비스 적합성 검토 </td> </tr> </table>	규제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미국 FDA 등 관련 규제의 초거대AI 서비스 적합성 검토 	
규제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규제의 적합성, 관련 사항 반영 필요 *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 미국 FDA 등 관련 규제의 초거대AI 서비스 적합성 검토 		
<p>※ 세부사항은 컨소시엄 간 협의 후 추진 (전담기관 확인)</p>			

□ 성과물 귀속

- (결과물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제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 * 추후 협약 시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사업화 및 해외 수출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NIPA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 별도 양식 송부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 채용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출연금)와 민간부담금(현물 및 현금)으로 구성
 -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
 - *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단,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2 기관별 사업비 배분

-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관/참여기관별 사업비를 타당하게 배분
 -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협약서류 검토 시 조정 가능
 - * 기관별 사업비(국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3 민간부담금 비율 (현물/현금)

- 국비/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공기업·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학교 등)의 경우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공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사업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 (유형자산)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 단,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고, '19년 4월 이후 구입자산
 -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또는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4 비·세목별 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사업비 정산은 NIPA가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참조(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 5천만원 미만	600천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천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천원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천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천원	· 30억원 이상	2,100천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천원		

-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 단, 과제목표 달성도와 무관한 무분별한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므로,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
 -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 주관/참여 각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제안해야 함(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
-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 기타, PC, 노트북,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은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 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 준	구 매 허 용
신규인력(24년 1월 이후 채용)의 참여율 50% 이상 + 참여기간 6개월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취득자산 검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연구, 조사, 컨설팅(법률, 사업화, 성과분석) 등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 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관리용역비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위탁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용역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 과제의 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5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준, 신규)의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운영비(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으나, 사업추진비는 총사업비의 2% 이내로 편성해야 함
-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간접비 및 연구수당은 편성 불가
-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참조
- 편성된 사업비로 과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는 불가하며,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국비:민간부담금)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4. 05. 28(화) 15:00 까지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전산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SMART) 시스템 (smart.nipa.kr) → 연구책임자 선택, 총괄 책임자 로그인 전산접수 → 절차에 따라 전산 접수 → 제출 완료

※ 상세 전산접수 프로세스는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파일 참조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 접수>

The screenshot shows the SMART system login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logo for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 Below it, there are input fields for '아이디' (ID) and '비밀번호' (Password), and a '로그인' (Login) button. There are also radio buttons for '연구책임자' (Researcher) and '평가위원' (Reviewer), and a link for '회원가입' (Sign Up). A rainbow graphic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기존 회원의 로그인 방법 안내 (19.08.21 이후)
 서버이전으로 인해 2019년 8월 21일 이후 처음 로그인하는 회원은 반드시 아래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절차 실행 전 회원은 ID/PW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절차1. 로그인 후 임시비밀번호 발급 절차
절차2. 발급받은 임시비밀번호로 재로그인 절차
절차3. 본인인증 실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절차4. 비밀번호 변경 (우측상단 회원정보수정)

* 익스플로러에서 본인인증 후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크롬에서 진행하십시오.
 * 기존 ID 및 메일주소를 분실하신 회원은 신규가입 하세요.
 * 시스템문의 : 070-5151-8239, 8234, 8215

사업안내
 - [신시장 창출](#)
 - [인공지능산업육성](#)
 - [신기술콘텐츠산업육성](#)
 - [ICT생태계구축](#)
 - [기타/부설](#)

알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입력 안내
 총괄책임자 이거나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상세보기](#)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국민체감형** 또는 **전문가 보조**] **과제명**) **컨소시엄명**.zip 파일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기업)	참여 (병원)	참여 (기타 비영리)
1. 사업계획서	○	○	X	X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
3. (최근 3년) 재무제표 ('21년~'23년) * '23년 재무제표 부재시 ('20년~'22년)	X	○	X	○
4.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	X	X
6.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 기업, 비영리기관 등)	X	○	○	○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8.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
9. 일자리 창출계획서	○	○	○	○
10.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
11. AI학습데이터 구축 비용 중복 관련 자진신고서(해당시)	○	○	○	○
12. 평가항목 참조표	○	○	X	X
13.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	○	○	○
14. 발표자료	X	○	X	X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노승우 책임 (rsw@nipa.kr)	043-931-5404
전산접수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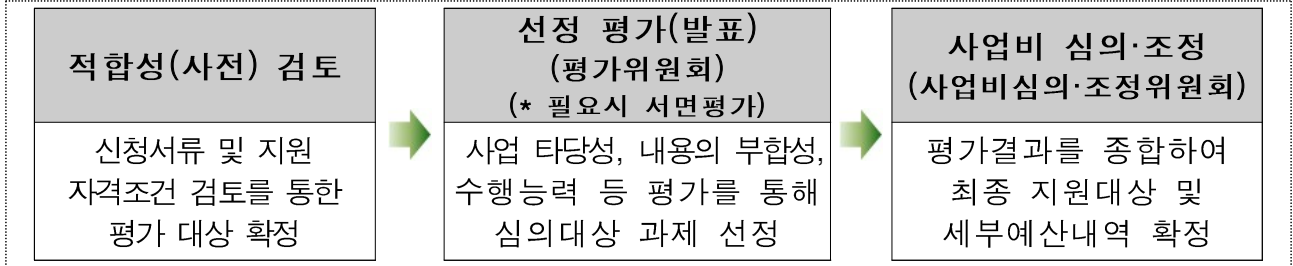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대상이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추진 가능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 4월	○ 공고(NIPA 홈페이지)	NIPA
↓			
접수	'24. 4~5월	○ 전산접수 * NIPA 사업관리시스템(smar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 6월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 6월 초 예정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 6월	○ 제안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협약체결 및 수행	'24. 6월	○ NIPA - 수행기관 협약	NIPA,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 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선정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고득점 순 1,2순위 컨소시엄 선정)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확정(평가점수 산출, 평가위원,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수행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 (평가결과) 평가 점수 ‘보통(6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 사전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

< 2024년 초거대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 평가표 >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개발 사항 (25)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내용의 목적 부합성 평가 - 지원사업 이해도, 과제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구체성 - 개발 내용(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계획 적정성 	10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내용의 기술성 평가 - 생성형AI 적용 수준 및 최신기술 트렌드 반영(연차별) - 국내외 경쟁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장성 등 기술 경쟁력 	15
컨소시엄 (30)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의 역량 평가 - 주관(참여)기관 참여인력의 전문성(ICT, AI, 디지털헬스 등) - 주관(참여)기관 관련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20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의 추진체계 평가 - 주관(참여)기관 추진체계 적절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기관 간의 R&R 구분 및 협업 등 추진 전략 평가 	10
보급 확산 (30)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거대AI 서비스의 실증 방안 평가 - 심리케어 특화 모델 형태의 서비스 실증 방안 구체성 - 모델 성능 검증 방법, 서비스 평가 방안 구체성 	15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거대AI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평가 -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실현(보급·확산) 가능성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홍보·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15
사업 관리 (15)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계획, 성과물 산출 일정 등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관리의 적정성 - 주관(참여)기관 투입인력의 적정성, 기타 협력 자문단 구성 - 내부 성과관리 방안, 리스크 관리방안 등 	5
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 · 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 · 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 · 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 · 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협약체결

- 평가 ·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 보완 후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m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 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 된 경우 등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구분	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황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협력부처,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24년 협약체결월 ~ ‘24년 12월 31일(1차년도)
‘25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2차년도)
‘26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3차년도)
‘27년 1월 1일 ~ ‘27년 12월 31일(4차년도)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컨소시엄의 경우)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수 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선정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前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 공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결과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기타

- 과제 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운영 등을 위해 NIPA(전담기관)의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하며 학습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제출하여야 함
-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본 과제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야 함

- AI시스템 개발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2023. TTA)” 에 따라 개발해야 하며, 아래 고위험군에 해당 시 개발안내서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증기관을 통해 검인증을 수행해야 함

- 고위험군 : 에너지.교통, 원자력, 응급서비스, 의료기기, 생체정보, 채용.채용.평가, 공공
활용 등의 분야

※ 검인증 비용은 지원금에서 부담 가능